

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심재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4.

발의자 : 심재권 · 김경협 · 정성호

이용주 · 김병관 · 설훈

서형수 · 노웅래 · 윤후덕

권미혁 · 신창현 · 강창일

박남춘 · 박홍근 · 인재근

황주홍 · 윤종오 의원

(17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,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.

한편,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 · 팩스 · 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,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.

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,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

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.

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,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(안 제22조제2항 신설).

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각각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·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.

제75조제1항제2호 중 “제22조제5항”을 “제22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22조제4항”을 “제22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(생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부호·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.
② · ③ (생 략)	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 ⑤ ----- ---제3항----- ----- -----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	⑦ -----제6항-----

<p>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<u>제5항</u>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7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생 략)</li><li>2. <u>제22조제5항</u>을 위반하여 법 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</li><li>3. (생 략)</li></ol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생 략)</li><li>2. 제16조제3항 또는 <u>제22조제4항</u>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</li><li>3. ~ 13. (생 략)</li></ol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(생 략)</li></ol>	<p>----- ----- <u>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75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제22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제22조제5항</u>----- ----- 3. ~ 13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<p>2. 제22조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</u> 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</p> <p>3. ~ 11. (생략) ④ (생략)</p>	<p>2.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11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	--